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59회 제2차 정례회 (2022. 12. 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 국 모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2-126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15일(화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8일(금)

2. 제출사유

동 조례의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)
 - 위원 구성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
- 나.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)
 - “디지털재정과장” ⇒ “새마포담당관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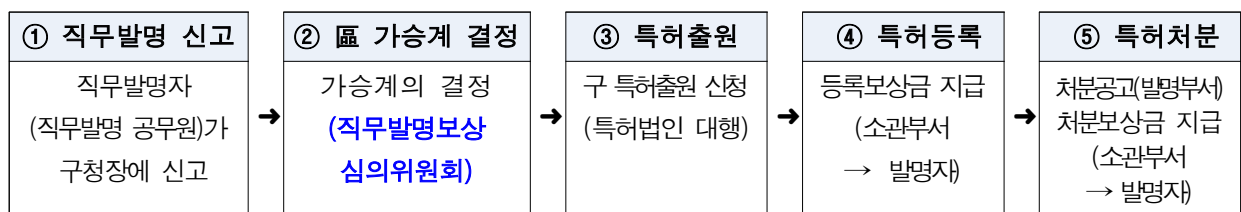
4. 관계법령

「발명진흥법」 제10조(직무발명), 제15조(직무발명에 대한 보상)

5. 검토보고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,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(안 제21조), 위원회 간사를 ‘디지털재정과장’에서 ‘새마포담당관’으로 변경하는 것임(안 제25조)
- 안 제21조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은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성비(性比)를 균형 있게 위촉함으로써 직무발명 심의시 양성의 의견이 고르게 개진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, 안 제25조는 이 조례 소관부서의 변경에 의한 개정임.
- 한편, 최근 5년간 마포구의 직무발명 보상 현황을 보면 2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, 직무발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저조한 결과임.
- 직무발명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의혁신 제도와의 연관되는 사업으로 직무발명과 창의 혁신으로 구 예산이 절감되고, 행정 절차 등을 개선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직무발명 관련 직원 교육과 홍보 활동이 필요해 보임.
- 또한, 직무발명 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전 직원에게 공유되어서 정당한 직무발명 제안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직무발명(특허, 실용신안) 업무 절차

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직무발명법

제10조(직무발명)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, 실용신안등록, 디자인등록(이하 “특허등”이라 한다)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(이하 “특허권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통상실시권(通常實施權)을 가진다. 다만, 사용자등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7. 30.>

1.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
2.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(이하 “공무원등”이라 한다)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국·공립학교(이하 “국·공립학교”라 한다)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(이하 “전담조직”이라 한다)이 승계할 수 있으며,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·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. <개정 2021. 4. 20.>

제15조(직무발명에 대한 보상)

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 7. 30., 2021. 4. 20.>